동탄2신도시 A70,A71,A72블록

「사랑으로」 부영 입주자모집공고

사랑으로

(주)부영주택

동탄2신도시 A70,A71,A72블록「사랑으로」부영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2015.12.29. 전부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08.10.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이며,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화성시)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본 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가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에서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 현재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15.08.10.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2016.02.10.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20%를 공급(화성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96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입주자 선정 및 동·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 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최저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 현재 공급신청자나 공급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세 명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고령자 및 장애인과 다자녀가구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고령자 및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2015.02.27.)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 : 기존 ' 1,2,3순위' 방식을 → ' 1,2순위' 방식으로 간소화 되며, 수도권 1순위 발생 요건이 기존 ' 2년, 24회 납입' 을 → ' 1년, 12회 납입' 으로 변경됩니다.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 요건완화: 기존 ' 무주택세대주' 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세대주가 아닌 ' 무주택세대 구성원' 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1세대 1명 신청)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 주택규모변경 기간(2년) 및 주택규모 상향 시 청약제한 기간(3개월) 폐지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 ' 60㎡ 이하 +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에서 → ' 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 로 변경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41조의2 및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6.09.02)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당첨자는 물론 기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전용면적 85㎡이하는 당첨일로부터 3년, 전용면적 85㎡초과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재당첨이 제한됩니다.(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에 해당)
- 단,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체결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http://dongtan2hosu.booyoung.co.kr)를 운영하므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견본주택을 방문해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자격별 청약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 일정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29-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당사 홈페이지(http://dongtan2hosu.booyoung.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5.12.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 주택과(2016.08.05) - 4841호(A70블록), 4843호(A71블록), 4845호(A72블록) 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A70,A71,A72블록

■ **공급규모**

• **A70블록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지상15~28층 7개동 총 64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00세대포함(기관추천특별공급 61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61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61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7세대 포함)〕

• **A71블록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지상15~25층 6개동 총 5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03세대포함(기관추천특별공급 22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49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22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0세대 포함)〕

• **A72블록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3층, 지상15~27층 8개동 총 70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41세대포함(기관추천특별공급 29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66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29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7세대 포함)〕

■ **공급대상**

• **A70블록**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 세대수							최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합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합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소계			
민영 주택	2016000000-01	59.9912	59.9912	23.3183	83.3095	38.3770	121.6865	43.2260	30	30	30	9	99	208	307	10
	2016000000-02	60.3768	60.3768	23.4296	83.8064	41.8268	125.6332	43.5038	11	11	11	3	36	82	118	7
	2016000000-03	84.5200A	84.5200	25.4139	109.9339	53.3763	163.3102	60.8999	10	10	10	3	33	75	108	4
	2016000000-04	84.5442B	84.5442	25.2579	109.8021	53.3915	163.1936	60.9174	5	5	5	1	16	38	54	2
	2016000000-05	84.5413C	84.5413	25.2602	109.8015	53.3896	163.1911	60.9153	5	5	5	1	16	38	54	2

• **A71블록**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 세대수							최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합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합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소계			
민영 주택	2016000000-01	84.5200A	84.5200	25.5891	110.1091	53.9090	164.0181	58.3569	11	11	11	3	36	79	115	5
	2016000000-02	84.5442B	84.5442	25.4333	109.9775	53.9244	163.9019	58.3736	6	6	6	1	19	46	65	3
	2016000000-03	84.5413C	84.5413	25.4355	109.9768	53.9225	163.8993	58.3716	5	5	5	1	16	34	50	2
	2016000000-04	88.4828A	88.4828	25.5689	114.0517	56.2653	170.3170	61.0930	0	11	0	3	14	101	115	5
	2016000000-05	88.0279B	88.0279	25.3379	113.3658	55.9757	169.3415	60.7790	0	5	0	1	6	44	50	2
	2016000000-06	88.0250C	88.0250	25.3402	113.3652	55.9739	169.3391	60.7770	0	6	0	1	7	58	65	3
	2016000000-07	134.8169A	134.8169	26.2908	161.1077	89.3317	250.4394	93.0845	0	3	0	0	3	27	30	2
	2016000000-08	134.9413B	134.9413	27.0267	161.9680	89.4140	251.3820	93.1704	0	1	0	0	1	14	15	1
	2016000000-09	134.9668C	134.9668	27.0046	161.9714	89.4308	251.4022	93.1880	0	1	0	0	1	14	15	1

• **A72블록**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 세대수							최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합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합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소계			
민영 주택	2016000000-01	84.5200A	84.5200	25.7645	110.2845	55.1371	165.4216	57.5562	15	15	15	4	49	106	155	5
	2016000000-02	84.5442B	84.5442	25.6087	110.1529	55.1529	165.3058	57.5726	8	8	8	2	26	63	89	4
	2016000000-03	84.5413C	84.5413	25.6109	110.1522	54.1510	165.3032	57.5707	6	6	6	2	20	49	69	3
	2016000000-04	88.4828A	88.4828	25.7075	114.1903	57.6460	171.8363	60.2547	0	15	0	4	19	133	152	6
	2016000000-05	88.0279B	88.0279	25.4759	113.5038	57.3494	170.8532	59.9450	0	6	0	2	8	61	69	3
	2016000000-06	88.0250C	88.0250	25.4782	113.5032	57.3476	170.8508	59.9430	0	8	0	2	10	74	84	4
	2016000000-07	134.8169A	134.8169	26.6155	161.4324	86.5844	248.0168	91.8072	0	4	0	1	5	38	43	1
	2016000000-08	134.9413B	134.9413	27.3518	162.2931	86.6644	248.9575	91.8919	0	2	0	0	2	18	20	1
	2016000000-09	134.9668C	134.9668	27.3297	162.2965	86.6808	248.9773	91.9093	0	2	0	0	2	23	25	1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A70블록

(단위 : 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시	1회(15%) 2017.01.30	2회(15%) 2017.06.30	3회(15%) 2017.11.30	4회(15%) 2018.04.30	입주지정일
59	기준층	262	113,161,589	179,938,411	293,100,000	29,310,000	43,965,000	43,965,000	43,965,000	43,965,000	87,930,000
	4층	12	113,161,589	176,838,411	290,000,000	29,0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87,000,000
	3층	12	113,161,589	173,838,411	287,000,000	28,700,000	43,050,000	43,050,000	43,050,000	43,050,000	86,100,000
	2층	11	113,161,589	170,838,411	284,000,000	28,4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85,200,000
	1층	10	113,161,589	164,838,411	278,000,000	27,8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83,400,000
60	기준층	88	113,888,843	179,211,157	293,100,000	29,310,000	43,965,000	43,965,000	43,965,000	43,965,000	87,930,000
	4층	8	113,888,843	176,111,157	290,000,000	29,0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87,000,000
	3층	8	113,888,843	173,111,157	287,000,000	28,700,000	43,050,000	43,050,000	43,050,000	43,050,000	86,100,000
	2층	7	113,888,843	170,111,157	284,000,000	28,4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85,200,000
	1층	7	113,888,843	164,111,157	278,000,000	27,8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83,400,000
84A	기준층	92	159,430,192	225,269,808	384,700,000	38,470,000	57,705,000	57,705,000	57,705,000	57,705,000	115,410,000
	4층	4	159,430,192	220,569,808	380,000,000	38,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14,000,000
	3층	4	159,430,192	217,569,808	377,000,000	37,700,000	56,550,000	56,550,000	56,550,000	56,550,000	113,100,000
	2층	4	159,430,192	213,569,808	373,000,000	37,300,000	55,950,000	55,950,000	55,950,000	55,950,000	111,900,000
	1층	4	159,430,192	205,569,808	365,000,000	36,50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109,500,000
84B	기준층	46	159,476,005	225,223,995	384,700,000	38,470,000	57,705,000	57,705,000	57,705,000	57,705,000	115,410,000
	4층	2	159,476,005	220,523,995	380,000,000	38,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14,000,000
	3층	2	159,476,005	217,523,995	377,000,000	37,700,000	56,550,000	56,550,000	56,550,000	56,550,000	113,100,000
	2층	2	159,476,005	213,523,995	373,000,000	37,300,000	55,950,000	55,950,000	55,950,000	55,950,000	111,900,000
	1층	2	159,476,005	205,523,995	365,000,000	36,50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109,500,000
84C	기준층	46	159,470,507	225,229,493	384,700,000	38,470,000	57,705,000	57,705,000	57,705,000	57,705,000	115,410,000
	4층	2	159,470,507	220,529,493	380,000,000	38,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14,000,000
	3층	2	159,470,507	217,529,493	377,000,000	37,700,000	56,550,000	56,550,000	56,550,000	56,550,000	113,100,000
	2층	2	159,470,507	213,529,493	373,000,000	37,300,000	55,950,000	55,950,000	55,950,000	55,950,000	111,900,000
	1층	2	159,470,507	205,529,493	365,000,000	36,50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109,500,000

• A71블록

(단위 : 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시	1회(15%) 2017.01.30	2회(15%) 2017.06.30	3회(15%) 2017.11.30	4회(15%) 2018.04.30	입주지정일
84A	기준층	95	164,648,105	233,851,895	398,500,000	39,850,000	59,775,000	59,775,000	59,775,000	59,775,000	119,550,000
	4층	5	164,648,105	229,351,895	394,000,000	39,4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118,200,000
	3층	5	164,648,105	225,351,895	390,000,000	39,0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117,000,000
	2층	5	164,648,105	221,351,895	386,000,000	38,6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115,800,000
	1층	5	164,648,105	213,351,895	378,000,000	37,8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113,400,000
84B	기준층	53	164,695,222	233,804,778	398,500,000	39,850,000	59,775,000	59,775,000	59,775,000	59,775,000	119,550,000
	4층	3	164,695,222	229,304,778	394,000,000	39,4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118,200,000
	3층	3	164,695,222	225,304,778	390,000,000	39,0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117,000,000
	2층	3	164,695,222	221,304,778	386,000,000	38,6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115,800,000
	1층	3	164,695,222	213,304,778	378,000,000	37,8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113,400,000
84C	기준층	42	164,689,579	233,810,421	398,500,000	39,850,000	59,775,000	59,775,000	59,775,000	59,775,000	119,550,000
	4층	2	164,689,579	229,310,421	394,000,000	39,4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118,200,000
	3층	2	164,689,579	225,310,421	390,000,000	39,0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117,000,000
	2층	2	164,689,579	221,310,421	386,000,000	38,6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115,800,000
	1층	2	164,689,579	213,310,421	378,000,000	37,8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113,400,000
88A	기준층	95	172,367,735	246,632,265	419,000,000	41,900,000	62,850,000	62,850,000	62,850,000	62,850,000	125,700,000
	4층	5	172,367,735	241,632,265	414,000,000	41,4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124,200,000
	3층	5	172,367,735	237,632,265	410,000,000	41,0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123,000,000
	2층	5	172,367,735	233,632,265	406,000,000	40,6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121,800,000
	1층	5	172,367,735	225,632,265	398,000,000	39,8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119,400,000
88B	기준층	42	171,481,815	247,518,185	419,000,000	41,900,000	62,850,000	62,850,000	62,850,000	62,850,000	125,700,000

	4층	2	171,481,815	242,518,185	414,000,000	41,4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124,200,000
	3층	2	171,481,815	238,518,185	410,000,000	41,0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123,000,000
	2층	2	171,481,815	234,518,185	406,000,000	40,6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121,800,000
	1층	2	171,481,815	226,518,185	398,000,000	39,8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119,400,000
88C	기준층	53	171,476,173	247,523,827	419,000,000	41,900,000	62,850,000	62,850,000	62,850,000	62,850,000	125,700,000
	4층	3	171,476,173	242,523,827	414,000,000	41,4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124,200,000
	3층	3	171,476,173	238,523,827	410,000,000	41,0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123,000,000
	2층	3	171,476,173	234,523,827	406,000,000	40,6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121,800,000
	1층	3	171,476,173	226,523,827	398,000,000	39,8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119,400,000
134A	기준층	22	262,628,524	312,371,476	575,000,000	57,50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172,500,000
	4층	2	262,628,524	306,371,476	569,000,000	56,900,000	85,350,000	85,350,000	85,350,000	85,350,000	170,700,000
	3층	2	262,628,524	300,371,476	563,000,000	56,300,000	84,450,000	84,450,000	84,450,000	84,450,000	168,900,000
	2층	2	262,628,524	294,371,476	557,000,000	55,700,000	83,550,000	83,550,000	83,550,000	83,550,000	167,100,000
	1층	2	262,628,524	283,371,476	546,000,000	54,6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163,800,000
134B	기준층	11	262,870,882	312,129,118	575,000,000	57,50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172,500,000
	4층	1	262,870,882	306,129,118	569,000,000	56,900,000	85,350,000	85,350,000	85,350,000	85,350,000	170,700,000
	3층	1	262,870,882	300,129,118	563,000,000	56,300,000	84,450,000	84,450,000	84,450,000	84,450,000	168,900,000
	2층	1	262,870,882	294,129,118	557,000,000	55,700,000	83,550,000	83,550,000	83,550,000	83,550,000	167,100,000
	1층	1	262,870,882	283,129,118	546,000,000	54,6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163,800,000
134C	기준층	11	262,920,539	312,079,461	575,000,000	57,50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172,500,000
	4층	1	262,920,539	306,079,461	569,000,000	56,900,000	85,350,000	85,350,000	85,350,000	85,350,000	170,700,000
	3층	1	262,920,539	300,079,461	563,000,000	56,300,000	84,450,000	84,450,000	84,450,000	84,450,000	168,900,000
	2층	1	262,920,539	294,079,461	557,000,000	55,700,000	83,550,000	83,550,000	83,550,000	83,550,000	167,100,000
	1층	1	262,920,539	283,079,461	546,000,000	54,6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163,800,000

• **A72블록**

(단위 : 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시	1회(15%) 2017.01.30	2회(15%) 2017.06.30	3회(15%) 2017.11.30	4회(15%) 2018.04.30	입주지정일
84A	기준층	130	162,700,391	235,599,609	398,300,000	39,830,000	59,745,000	59,745,000	59,745,000	59,745,000	119,490,000
	4층	7	162,700,391	231,299,609	394,000,000	39,4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118,200,000
	3층	7	162,700,391	227,299,609	390,000,000	39,0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117,000,000
	2층	6	162,700,391	223,299,609	386,000,000	38,6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115,800,000
	1층	5	162,700,391	215,299,609	378,000,000	37,8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113,400,000
84B	기준층	73	162,746,750	235,553,250	398,300,000	39,830,000	59,745,000	59,745,000	59,745,000	59,745,000	119,490,000
	4층	4	162,746,750	231,253,250	394,000,000	39,4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118,200,000
	3층	4	162,746,750	227,253,250	390,000,000	39,0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117,000,000
	2층	4	162,746,750	223,253,250	386,000,000	38,6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115,800,000
	1층	4	162,746,750	215,253,250	378,000,000	37,8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113,400,000
84C	기준층	57	162,741,379	235,558,621	398,300,000	39,830,000	59,745,000	59,745,000	59,745,000	59,745,000	119,490,000
	4층	3	162,741,379	231,258,621	394,000,000	39,4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118,200,000
	3층	3	162,741,379	227,258,621	390,000,000	39,0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117,000,000
	2층	3	162,741,379	223,258,621	386,000,000	38,6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115,800,000
	1층	3	162,741,379	215,258,621	378,000,000	37,8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113,400,000
88A	기준층	125	170,328,535	248,171,465	418,500,000	41,850,000	62,775,000	62,775,000	62,775,000	62,775,000	125,550,000
	4층	7	170,328,535	243,671,465	414,000,000	41,4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124,200,000
	3층	7	170,328,535	239,671,465	410,000,000	41,0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123,000,000
	2층	7	170,328,535	234,671,465	405,000,000	40,500,000	60,750,000	60,750,000	60,750,000	60,750,000	121,500,000
	1층	6	170,328,535	226,671,465	397,000,000	39,70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119,100,000
88B	기준층	57	169,453,072	249,046,928	418,500,000	41,850,000	62,775,000	62,775,000	62,775,000	62,775,000	125,550,000
	4층	3	169,453,072	244,546,928	414,000,000	41,4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124,200,000
	3층	3	169,453,072	240,546,928	410,000,000	41,0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123,000,000
	2층	3	169,453,072	235,546,928	405,000,000	40,500,000	60,750,000	60,750,000	60,750,000	60,750,000	121,500,000
	1층	3	169,453,072	227,546,928	397,000,000	39,70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119,100,000
88C	기준층	68	169,447,419	249,052,581	418,500,000	41,850,000	62,775,000	62,775,000	62,775,000	62,775,000	125,550,000
	4층	4	169,447,419	244,552,581	414,000,000	41,4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124,200,000

	3층	4	169,447,419	240,552,581	410,000,000	41,0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123,000,000
	2층	4	169,447,419	235,552,581	405,000,000	40,500,000	60,750,000	60,750,000	60,750,000	60,750,000	121,500,000
	1층	4	169,447,419	227,552,581	397,000,000	39,70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119,100,000
134A	기준층	37	259,521,430	313,478,570	573,000,000	57,300,000	85,950,000	85,950,000	85,950,000	85,950,000	171,900,000
	4층	2	259,521,430	307,478,570	567,000,000	56,700,000	85,050,000	85,050,000	85,050,000	85,050,000	170,100,000
	3층	2	259,521,430	301,478,570	561,000,000	56,100,000	84,150,000	84,150,000	84,150,000	84,150,000	168,300,000
	2층	1	259,521,430	295,478,570	555,000,000	55,500,000	83,250,000	83,250,000	83,250,000	83,250,000	166,500,000
	1층	1	259,521,430	284,478,570	544,000,000	54,4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163,200,000
134B	기준층	16	259,760,861	313,239,139	573,000,000	57,300,000	85,950,000	85,950,000	85,950,000	85,950,000	171,900,000
	4층	1	259,760,861	307,239,139	567,000,000	56,700,000	85,050,000	85,050,000	85,050,000	85,050,000	170,100,000
	3층	1	259,760,861	301,239,139	561,000,000	56,100,000	84,150,000	84,150,000	84,150,000	84,150,000	168,300,000
	2층	1	259,760,861	295,239,139	555,000,000	55,500,000	83,250,000	83,250,000	83,250,000	83,250,000	166,500,000
	1층	1	259,760,861	284,239,139	544,000,000	54,4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163,200,000
134C	기준층	21	259,810,047	313,189,953	573,000,000	57,300,000	85,950,000	85,950,000	85,950,000	85,950,000	171,900,000
	4층	1	259,810,047	307,189,953	567,000,000	56,700,000	85,050,000	85,050,000	85,050,000	85,050,000	170,100,000
	3층	1	259,810,047	301,189,953	561,000,000	56,100,000	84,150,000	84,150,000	84,150,000	84,150,000	168,300,000
	2층	1	259,810,047	295,189,953	555,000,000	55,500,000	83,250,000	83,250,000	83,250,000	83,250,000	166,500,000
	1층	1	259,810,047	284,189,953	544,000,000	54,4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163,200,000

※ 평형 환산 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 A70블록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59.9912	60.3768	84.5200A	84.5442B	84.5413C
약식표기	59	60	84A	84B	84C

• A71블록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84.5200A	84.5442B	84.5413C	88.4828A	88.0279B	88.0250C	134.8169A	134.9413B	134.9668C
약식표기	84A	84B	84C	88A	88B	88C	134A	134B	134C

• A72블록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84.5200A	84.5442B	84.5413C	88.4828A	88.0279B	88.0250C	134.8169A	134.9413B	134.9668C
약식표기	84A	84B	84C	88A	88B	88C	134A	134B	134C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면적은 「주택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동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 등)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 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 제세공과금 등이 미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각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선택은 청약당첨자 분양 계약시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 호수를 추첨하여 당첨자 선정함.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관계법령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유치원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음.)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납부하여야 함.(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기준으로 납부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자세한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됨)
- 상기 아파트 동번호는 ‘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 동번호 부여원칙’ 에 따라 동번호가 부여되므로, 향후 상기의 동번호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임.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장애인□중소기업근로자□군인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 한정)으로서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특별공급신청 및 당첨자 선정일시 · 장소 (A70블록 □A71블록 □A72블록 공통)

구 분		일 시	장 소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특별공급 신청	2016. 08. 17(수) / 10:00~15:00	사랑으로 부영 동탄 견본 주택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29-1번지 일원 (문의 : 1577-5533)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2016. 08. 17(수) / 17:00	

※ 당첨자 선정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2. 특별공급 입주자저축(청약자격 요건)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
 가.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나.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 금액이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 기준이 청약예금 지역· 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홈페이지에서 공급 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가.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나.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 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1순위자
 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 기준이 청약예금 지역· 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1순위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 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3. 특별공급 유의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차례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적용됨.
-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 가’ 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무주택 여부 확인대상자: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상기 ‘ 공급신청자격자’에 포함되는 분들은 전부 무주택이어야 하며, 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세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여부 대상에 포함됨.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주의 형제· 자매·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 사위 등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 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은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없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당첨일자가 중복되는 타 공동주택과 동시에 청약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후 동시에 당첨시 모두 무효로 처리함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람.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서약서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외)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1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및 미성년인 자녀가 세명 이상인 자 중 주택공급 신청시 1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자 중 당첨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형의 1층을 우선 배정함.
 [단,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을 우선배정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

4. 계약체결일

- **A70블록 : 2016.09.02.(금) ~ 2016.09.05.(월) [3일간 / 시간 : 10:00 ~ 17:00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A71블록 : 2016.09.01.(목) ~ 2016.09.03.(토) [3일간 / 시간 : 10:00 ~ 17:00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A72블록 : 2016.08.31.(수) ~ 2016.09.02.(금) [3일간 / 시간 : 10:00 ~ 17:00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

- **A70블록**

(단위 : ㎡, 세대)

구 분		59	60	84A	84B	84C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자,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	30	11	10	5	5	61
다자녀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15	6	5	3	3	3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5	5	5	2	2	29
	소 계	30	11	10	5	5	61
신혼부부 특별공급	화성시 거주자(30%)	9	4	3	2	2	20
	경기도 거주자(20%)	6	2	2	1	1	1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5	5	5	2	2	29
	소 계	30	11	10	5	5	6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화성시 거주자(30%)	3	1	1	1	1	7
	경기도 거주자(20%)	2	1	1	0	0	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4	1	1	0	0	6
	소 계	9	3	3	1	1	17
합 계		99	36	33	16	16	200

- **A71블록**

(단위 : ㎡, 세대)

구 분		84A	84B	84C	88A	88B	88C	134A	134B	134C	합계
기관추천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자,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	11	6	5	0	0	0	0	0	0	22
다자녀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6	3	3	6	3	3	2	1	1	28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5	3	2	5	2	3	1	0	0	21
	소 계	11	6	5	11	5	6	3	1	1	49
신혼부부 특별공급	화성시 거주자(30%)	4	2	2	0	0	0	0	0	0	8
	경기도 거주자(20%)	2	1	1	0	0	0	0	0	0	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5	3	2	0	0	0	0	0	0	10
	소 계	11	6	5	0	0	0	0	0	0	2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화성시 거주자(30%)	1	1	1	1	1	1	0	0	0	6
	경기도 거주자(20%)	1	0	0	1	0	0	0	0	0	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	0	0	1	0	0	0	0	0	2

	소 계	3	1	1	3	1	1	0	0	0	10
합 계		36	19	16	14	6	7	3	1	1	103

• **A72블록** (단위 : ㎡, 세대)

구 분		84A	84B	84C	88A	88B	88C	134A	134B	134C	합계
기관추천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자,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	15	8	6	0	0	0	0	0	0	29
다자녀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8	4	3	8	3	4	2	1	1	3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7	4	3	7	3	4	2	1	1	32
	소 계	15	8	6	15	6	8	4	2	2	66
신혼부부 특별공급	화성시 거주자(30%)	5	2	2	0	0	0	0	0	0	9
	경기도 거주자(20%)	3	2	1	0	0	0	0	0	0	6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7	4	3	0	0	0	0	0	0	14
	소 계	15	8	6	0	0	0	0	0	0	2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화성시 거주자(30%)	1	1	1	1	1	1	1	0	0	7
	경기도 거주자(20%)	1	1	1	1	1	1	0	0	0	6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2	0	0	2	0	0	0	0	0	4
	소 계	4	2	2	4	2	2	1	0	0	17
합 계		49	26	20	19	8	10	5	2	2	141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A70블록 61세대, A71블록 22세대, A72블록 29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건설량 10% 이내)**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구 분			59	60	84A	84B	84C	88A	88B	88C	134A	134B	134C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자,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	A70블록	30	11	10	5	5	0	0	0	0	0	0	61
		A71블록	0	0	11	6	5	0	0	0	0	0	0	22
		A72블록	0	0	15	8	6	0	0	0	0	0	0	29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자,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단, 이주대책 대상자 중 1군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와 상관없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기관
 가. 국가유공자 : 보훈청(복지과)
 나. 장애인 : 지자체(장애인복지과)
 다. 중소기업근로자 : 중소기업청
 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복지정책과)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공급포함)을 받은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 호 배정) 및 계약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A70블록 61세대, A71블록 49세대, A72블록 66세대 / 전체 주택건설량 10% 이내)**

• **다자녀 특별공급 세대수**

구 분			59	60	84A	84B	84C	88A	88B	88C	134A	134B	134C	합계
다자녀 특별공급	A70블록	경기도 거주자(50%)	15	6	5	3	3	0	0	0	0	0	0	3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5	5	5	2	2	0	0	0	0	0	0	29
		계	30	11	10	5	5	0	0	0	0	0	0	61
	A71블록	경기도 거주자(50%)	0	0	6	3	3	6	3	3	2	1	1	28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0	0	5	3	2	5	2	3	1	0	0	21
		계	0	0	11	6	5	11	5	6	3	1	1	49
	A72블록	경기도 거주자(50%)	0	0	8	4	3	8	3	4	2	1	1	3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0	0	7	4	3	7	3	4	2	1	1	32
		계	0	0	15	8	6	15	6	8	4	2	2	66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원(세대주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이면 1인 1청약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되며, 입양자녀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94]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미달시 타 시· 도에 배정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가.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나.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접수기재)**

평 점 요 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해당 사항	비 고
		기 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 (4)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해당 시· 도 거주기간 (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도로 본다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A70블록 61세대, A71블록 22세대, A72블록 29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건설량 10% 이내)

•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수**

구 분			59	60	84A	84B	84C	88A	88B	88C	134A	134B	134C	합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A70블록	화성시 거주자(30%)	9	4	3	2	2	0	0	0	0	0	0	20
		경기도 거주자(20%)	6	2	2	1	1	0	0	0	0	0	0	1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5	5	5	2	2	0	0	0	0	0	0	29
		계	30	11	10	5	5	0	0	0	0	0	0	61
	A71블록	화성시 거주자(30%)	0	0	4	2	2	0	0	0	0	0	0	8
		경기도 거주자(20%)	0	0	2	1	1	0	0	0	0	0	0	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0	0	5	3	2	0	0	0	0	0	0	10
		계	0	0	11	6	5	0	0	0	0	0	0	22
	A72블록	화성시 거주자(30%)	0	0	5	2	2	0	0	0	0	0	0	9
		경기도 거주자(20%)	0	0	3	2	1	0	0	0	0	0	0	6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0	0	7	4	3	0	0	0	0	0	0	14
		계	0	0	15	8	6	0	0	0	0	0	0	29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통계청 자료)

구 분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고시)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4,816,665원 이하	5,393,154원 이하	5,475,403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5,779,998원 이하	6,471,784원 이하	6,570,483원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함.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청약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임.

※ 월평균소득은 가구당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됨.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가.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나.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 배분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가.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자.
 나.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신혼부부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전직자 및 신규취업자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 날인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해당직장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	□접수장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A70블록 17세대, A71블록 10세대, A72블록 17세대 / 전체 주택건설량 3% 이내)**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세대수**

구 분			59	60	84A	84B	84C	88A	88B	88C	134A	134B	134C	합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A70블록	화성시 거주자(30%)	3	1	1	1	1	0	0	0	0	0	0	7
		경기도 거주자(20%)	2	1	1	0	0	0	0	0	0	0	0	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4	1	1	0	0	0	0	0	0	0	0	6
		계	9	3	3	1	1	0	0	0	0	0	0	17
	A71블록	화성시 거주자(30%)	0	0	1	1	1	1	1	1	0	0	0	6
		경기도 거주자(20%)	0	0	1	0	0	1	0	0	0	0	0	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0	0	1	0	0	1	0	0	0	0	0	2
		계	0	0	3	1	1	3	1	1	0	0	0	10
	A72블록	화성시 거주자(30%)	0	0	1	1	1	1	1	1	1	0	0	7
		경기도 거주자(20%)	0	0	1	1	1	1	1	1	0	0	0	6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0	0	2	0	0	2	0	0	0	0	0	4
		계	0	0	4	2	2	4	2	2	1	0	0	17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 청약가점 산정기준표’ 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 청약가점 기준표’ 를 작성토록 함(특별공급 신청기간 내 견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포함)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1)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2) 2순위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인터넷뱅킹 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 (※ 15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이용방법 및 절차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접속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KEB하나(구.하나은행, 구.외환은행),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만19세 미만인 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포함]인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 전용면적" 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로 관리되며 재사용 불가함.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자 또는 기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도 본 주택 청약이 가능함.

•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 분	화성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12.29.)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든 청약이 가능함.

• 순위별 자격요건 (A70블록 □A71블록 □A72블록 공통)

구분	순위	신청구분	청약 관련 예금	거주구분
민영 주택	1순위	전용면적 85㎡이하	• 가점제 40% 적용, 추첨제 6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이상인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규모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면적으로 선택하여야함) (4)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화성시 (1년 이상 거주) /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

			※ 청약신청시 모두 가점제로 접수함.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전용면적 85㎡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지역별· 면적별)에 따른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2)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지역별· 면적별)에 따른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2순위	전주택형	• 추첨제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신청접수방법

1.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2. 일반공급

(1) 공통

-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 현재 화성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 당해지역 거주자”), 경기도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 경기도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전원 청약순위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청약순위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당해지역(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20%를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동일 순위내에서 당해지역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수도권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 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함(차순위 공급세대 배분방식 및 공급순서 또한 선순위와 동일함)
- 당해지역 거주자 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해당지역 계속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제한됨.

(2) 1순위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에 따라 접수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85㎡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 적용)
-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3)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4)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청약 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자격 기재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 여부 등)을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만 30세미만 미혼	0	8년 이상~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10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4	10년 이상~11년 미만	22	
		2년 이상~3년 미만	6	11년 이상~12년 미만	24	
		3년 이상~4년 미만	8	12년 이상~13년 미만	26	
		4년 이상~5년 미만	10	13년 이상~14년 미만	28	
		5년 이상~6년 미만	12	14년 이상~15년 미만	30	
		6년 이상~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8년 미만	16		-	
② 부양 가족수	35	0명(가입자본인)	5	4명	25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 - 가입자 본인은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	
총 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 청 자 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 소형·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단, 2007.0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 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일반공급의 경우이며,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아래의 가. 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나.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다.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닌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05.0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으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해야 인정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 (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청약관련 예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2015.02.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 청약통장의 주택규모 변경요건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크게 변경시 별도의 제한기간 없이 수시 변경가능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작게 변경 불필요(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의 주택에 청약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 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요청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1,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함.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자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자 :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동일세대 구성시:주민등록표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 비속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 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처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2순위 청약신청금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 신청접수

구 분	금 액	신 청 금 납 부 방 법	
전주택형	100만원	거래은행 창구 청약자	가능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인터넷 청약자	주택청약 참가은행(기업, 국민, KEB하나(구.하나은행, 구.외환은행),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2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해야 함. (인터넷 청약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전 본인의 청약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등본등(초)본 발급시 "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A70블록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 [2016.08.30(화)] 부터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A71블록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 [2016.08.29(월)] 부터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A72블록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 [2016.08.26(금)] 부터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구 분	비 고
거래은행 창구 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시 접수은행에 개설될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환불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받아야 함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 환불대상 :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 자동환불 미신청자 창구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동일),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본인확인증표(※ 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위임장
• 2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3.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 일정 및 장소 (A70블록 □A71블록 □A72블록 공통)

구 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 청 장 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화성시 /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2016.08.17.(수) 10:00~15:00	견본주택 방문접수	• 사랑으로 부영 동탄 견본주택 : 경기도 화성시 방교리 29-1번지 일원 (문의전화 : 1877-5510)
일반공급	1순위		2016.08.18.(목) 08:00~17:30	인터넷신청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2순위		2016.08.19.(금) 08:00~17:30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 지점 창구에서 가능]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 확인 가능한 신분증

	O		주민등록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 도 지역 거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이 안될 경우 제출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O		청약통장 가입(순위)확인서	본인	□금융결제원(APT2you) 홈페이지 및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철거주택 소유자,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장애인 제외 (그 외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출)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O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및 추천명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로 청약신청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야 함)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이혼/재혼한 경우 자녀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야 함)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재직증명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며, 만19세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필요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본인 및 세대원	□접수 장소에 비치
	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구성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각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O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각각 필요(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제3자 대리인 신청시		O	위임장	청약자	□대리신청시(본인 외 모두 3자로 간주함) - 위임장은 접수장소에 비치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시는 제출생략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관한 공정증서
		O	신분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O	도장	대리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발급 시 "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 비속 포함)로 간주함.
※ 상기서류 외에 적격자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4.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동· 호수 발표	계약 체결
A70블럭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일시 : 2016.08.17.(수) 17:00 □장소 : 사랑으로 부영 동탄 견본주택	□일시 : 2016.08.29.(월) □확인방법 - 사랑으로 부영 동탄 견본주택 - 당사 홈페이지(http://dongtan2hosu.booyoung.co.kr)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일시 : 2016.09.02.(금)~2016.09.05.(월) (3일간, 10:00~16:00) □장소 : 사랑으로 부영 동탄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일시 : 2016.08.29.(월) □장소 : 사랑으로 부영 동탄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게재		
		2순위			
A71블럭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일시 : 2016.08.17.(수) 17:00 □장소 : 사랑으로 부영 동탄 견본주택	□일시 : 2016.08.26.(금) □확인방법 - 사랑으로 부영 동탄 견본주택 - 당사 홈페이지(http://dongtan2hosu.booyoung.co.kr)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일시 : 2016.09.01.(목)~2016.09.03.(토) (3일간, 10:00~16:00) □장소 : 사랑으로 부영 동탄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일시 : 2016.08.26.(금) □장소 : 사랑으로 부영 동탄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게재		
		2순위			
A72블럭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일시 : 2016.08.17.(수) 17:00 □장소 : 사랑으로 부영 동탄 견본주택	□일시 : 2016.08.25.(목) □확인방법 - 사랑으로 부영 동탄 견본주택 - 당사 홈페이지(http://dongtan2hosu.booyoung.co.kr)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일시 : 2016.08.31.(수)~2016.09.02.(금) (3일간, 10:00~16:00) □장소 : 사랑으로 부영 동탄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일시 : 2016.08.25.(목) □장소 : 사랑으로 부영 동탄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게재		
		2순위			

※ 특별공급 동· 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 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후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당일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서비스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당첨자 발표일부터 10일간 제공됨)

구 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APT →당첨사실조회
	이용기간	• **A70블록** : 2016.08.29. ~ 2016.09.07.(10일간) • **A71블록** : 2016.08.26. ~ 2016.09.04.(10일간) • **A72블록** : 2016.08.25. ~ 2016.09.03.(10일간)	
전화(ARS)	이용방법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전자금융 공동망 전화 1369(서비스코드 5#)
	이용기간	• **A70블록** : 2016.08.29. ~ 2016.09.07.(10일간) • **A71블록** : 2016.08.26. ~ 2016.09.04.(10일간) • **A72블록** : 2016.08.25. ~ 2016.09.03.(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주택청약신청시 SMS 당첨 통지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 **A70블록** : 2016.08.29.(09:00) • **A71블록** : 2016.08.26.(09:00) • **A72블록** : 2016.08.25.(09:00) ※ 제공시간은 각 은행 및 금융결제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 호수를 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 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화성시 1년 이상 거주한 청약자 중 낙첨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청약자(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낙첨자 포함) 중 낙첨자는 수도권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호수를 배정함.(동· 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 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 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동·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당첨자의 공급방법은 선정된 예비당첨자의 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되고,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5. 계약 체결

■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계약시 구비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공 통	O		•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O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함)], 인감도장
		O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O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1통 포함),
		O		• 주민등록초본 1통
			O	• 대리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추가사항 참조
			O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O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일반공급		O	• 가족관계증명서(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등)
			O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직계존· 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자에 한함)
			O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군 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저층 우선배정		O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구성원은 상기 공통 서류중 신분확인서류로 갈음)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O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O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계약금은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상기 구비서류 외 사업주체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계약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청약은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 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일반 공급에 한함),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2009.4.1 재당첨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 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A70블록 □A71블록 □A72블록 공통)**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972437-01-014200	(주)부영주택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입금방법 : 101동 101호 홍길동 당첨자의 경우 상기 계좌 입금시 입금자명 홍길동101-101으로 입금 바람)

※ 상기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떤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하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된 동· 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 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미납시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당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A70블록 : 2018년 09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A71블록 : 2018년 09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A72블록 : 2018년 09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됨.

6. 추가 선택품목 계약 및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

• A70블록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	발코니확장 공사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59	7,300,000	730,000	6,570,000
60	7,300,000	730,000	6,570,000
84A	14,900,000	1,490,000	13,410,000
84B	14,500,000	1,450,000	13,050,000
84C	14,500,000	1,450,000	13,050,000

• A71블록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	발코니확장 공사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14,900,000	1,490,000	13,410,000
84B	14,500,000	1,450,000	13,050,000
84C	14,500,000	1,450,000	13,050,000
88A	14,500,000	1,450,000	13,050,000
88B	13,600,000	1,360,000	12,240,000
88C	13,600,000	1,360,000	12,240,000
134A	15,700,000	1,570,000	14,130,000
134B	18,300,000	1,830,000	16,470,000
134C	18,300,000	1,830,000	16,470,000

• A72블록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	발코니확장 공사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14,900,000	1,490,000	13,410,000
84B	14,500,000	1,450,000	13,050,000
84C	14,500,000	1,450,000	13,050,000
88A	14,500,000	1,450,000	13,050,000
88B	13,600,000	1,360,000	12,240,000
88C	13,600,000	1,360,000	12,240,000
134A	15,700,000	1,570,000	14,130,000
134B	18,300,000	1,830,000	16,470,000
134C	18,300,000	1,830,000	16,470,000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A70블록 □A71블록 □A72블록 공통)**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 납부계좌	국민은행	972437-01-014200	(주)부영주택

- 발코니확장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함.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입금방법 : 101동 101호 홍길동 당첨자의 경우 상기 계좌 입금시 입금자명 홍길동101-101으로 입금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품목을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음(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본형 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샤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함(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기구를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 하시면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확장형을 중심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 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반침장 설치시 가구와 접한 측면, 후면, 천정 및 하부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시공되지 않는 마감재의 비용은 발코니확장 금액 책정시 반영되어 있음.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 금액

• A70블록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제조사	설치위치 및 대수 선택			설치금액	계약금(10%)	잔 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59 60	삼성전자	선택①	2대	거실+침실1	3,500,000	350,000	3,150,000
		선택②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300,000	630,000	5,670,000
	LG전자	선택①	2대	거실+침실1	3,500,000	350,000	3,150,000
		선택②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300,000	630,000	5,670,000
84A 84B 84C	삼성전자	선택①	3대	거실+주방+침실1	4,600,000	460,000	4,140,000
		선택②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900,000	790,000	8,690,000
	LG전자	선택①	3대	거실+주방+침실1	4,600,000	460,000	4,140,000
		선택②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900,000	790,000	7,110,000

• A71블록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제조사	설치위치 및 대수 선택			설치금액	계약금(10%)	잔 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B,C 88A,B,B	삼성전자	선택①	3대	거실+주방+침실1	4,600,000	460,000	4,140,000
		선택②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900,000	790,000	8,690,000
	LG전자	선택①	3대	거실+주방+침실1	4,600,000	460,000	4,140,000
		선택②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900,000	790,000	7,110,000
134A,B,C	삼성전자	선택①	3대	거실+주방+침실1	5,500,000	550,000	4,950,000

		선택②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9,500,000	950,000	8,550,000
	LG전자	선택①	3대	거실+주방+침실1	5,500,000	550,000	4,950,000
		선택②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9,500,000	950,000	8,550,000

• **A72블록**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제조사	설치위치 및 대수 선택			설치금액	계약금(10%)	잔 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B,C 88A,B,B	삼성전자	선택①	3대	거실+주방+침실1	4,600,000	460,000	4,140,000
		선택②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900,000	790,000	8,690,000
	LG전자	선택①	3대	거실+주방+침실1	4,600,000	460,000	4,140,000
		선택②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900,000	790,000	7,110,000
134A,B,C	삼성전자	선택①	3대	거실+주방+침실1	5,500,000	550,000	4,950,000
		선택②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9,500,000	950,000	8,550,000
	LG전자	선택①	3대	거실+주방+침실1	5,500,000	550,000	4,950,000
		선택②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9,500,000	950,000	8,550,000

•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비 납부계좌 (A70블록 □A71블록 □A72블록 공통)**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 금액 납부계좌	국민은행	972437-01-014200	(주)부영주택

-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함.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입금방법 : 101동 101호 홍길동 당첨자의 경우 상기 계좌 입금시 입금자명 홍길동101-101으로 입금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 관련 유의사항**

-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은 시공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다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일 경우 시스템에어컨 시공 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가동시에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각실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는 방의 냉방부하를 만족하는 용량으로 가변형 벽체를 확장할 경우에는 실면적이 증가하여 에어컨 용량이 부족할 수 있음.
- 에어컨 옵션 설치안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함.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2실)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시설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설비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공 통**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 옵션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 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 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공급 품목
바닥	마루, 타일, 걸레받이, 굽도리, 현관바닥재, 현관디딤판, 발코니 바닥타일(시멘트몰탈 포함)	바닥난방배관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 우수선홈통, 수공간 바닥방수(보호몰탈 시공)
벽	벽지(초배지 포함), 벽체마감 일체(타일 등), 아트월(타일, 판넬, 도장 등 일체 포함)	석고보드 마감, 단열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발코니벽 도장, GAS배관
천장	천정지(초배지 포함), 등박스(우물천정포함), 반자돌림(몰딩 포함)	천정틀 위 석고보드, 콘크리트 면처리(해당 부위)
조명기구	조명기구 일체 (직부등, 매입등, 센서등 일체)	배관배선,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액세서리류, 샤워부스, 욕실장, 욕실타일, 욕실선반, 욕실 인테리어(젠다이, 스위치, 콘센트 등 마감 일체)	조적, 방수, 미장, 전기설비 배관/배선 설비배관(급,배수 등 매립배관), 배기덕트욕실천정(배기팬 포함)
주방	본주방 및 다용도실 주방가구 및 가전류 일체(가스쿡탑등), 기구(상판 및 액세서리류), 벽타일, 수전류, 주방TV, 렌지후드	설비배관(급· 배수, 난방 등 매립배관 및 가스배관 단부 보호처리), 주방배기덕트
창호	목창호(문짝, 문틀, 상부덧판, 문선 등 일체) 및 욕실문, 창호철물일체(도어록, 경첩 포함), 디지털도어록, 금속도어	각실 내부 PL창호, 세대현관 방화문 및 도어록
가구 및 기타	가구 일체 (현관가구, 주방가구, 침실가구, 욕실가구, 시스템선반 등)	설비배관(에어컨 냉매배관), 거실 월패드

• 마이너스 옵션 금액

• A70블록 [단위 : 원]

주택형	59	60	84A	84B	84C
금 액	18,582,000	18,353,000	24,487,000	24,458,000	24,458,000

• A71블록 [단위 : 원]

주택형	84A	84B	84C	88A	88B	88C	134A	134B	134C
금 액	24,319,000	24,291,000	24,497,000	26,097,000	26,187,000	25,940,000	35,306,000	35,495,000	35,496,000

• A72블록 [단위 : 원]

주택형	84A	84B	84C	88A	88B	88C	134A	134B	134C
금 액	24,358,000	24,329,000	24,329,000	26,129,000	25,972,000	25,972,000	35,716,000	35,566,000	36,248,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양금액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 및 관련업무 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부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추후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 예정임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주방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함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 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사, 시공사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 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따라 원인규명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7.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공통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에 의거함.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2016년 7월 22일 사업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 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바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으로 통보 바라며, 이에 대한 누락으로 인한 당첨자의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함.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아니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지상에(A70블록 4대, A71블록 5대, A72블록 5대)가 별도로 구획되며, 관리주체는 아파트 관리주체와는 별개로 운영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함.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부동산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 취득신고를 해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는 60, 84A, 134A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 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 투시도, 사진 등은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 시 구조성능 확보,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홀,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공용홀기준층, 공용계단 벽,천장은 수성페인트 마감기준임) • 견본주택 및 각종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며,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D/A, TOP LIGHT,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주차장 계단실, 옥외 엘리베이터,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수입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주체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본공사 및 하자보수 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미건립평형의 위생기구(수전, 도기, 악세서리)제품은 동일 평형의 건립세대 기준으로 설치되며 일부 평면에 따라 일부 액세서리가 미설치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옵션 및 평면 가변형의 경우,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위치는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음.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펜던트, 스탠드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공사 제외 품목임.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제 시공 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의 폭, 깊이가 축소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도 발코니 비확장 부위가 있으며, 이 때 비확장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얇은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될 수 있음.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각종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확장형 기준이며,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구간에 난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동가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함. • 주방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본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음. •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나 하부에는 페인트로 마감됨. • 전 평형에 냉매배관 3개소(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안방 벽걸이형 기준 1개소, 침실2 벽걸이형 기준 1개소)가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됨. • 주방씽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됨. • 화장실 천장에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됨.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 한하여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비확장형 세대 포함)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사용승인후 우수침투방지를 위한 시설물(외부창호 설치등)은 “ 을”의 책임으로 진행하여야 함.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됨.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음. • 각 실별 발코니 비확장형 및 확장형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및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 할 수 있음.
분양홍보물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소공원, 공공공지, 자전거도로, 버스정류장 등)의 조성계획(예정 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함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인 동· 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매도인의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소급적용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택지개발 여건 및 단지외부 여건	• 화성동탄(2)지구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4호, 2016.03.02)로 승인된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0차) 및 실시계획 변경(10차)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인허가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향후 택지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택지개발지구는 현재 공사 중 으로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공사차량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단지 외부의 근린공원 및 공공시설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화성동탄(2)신도시 내 기존 공장(연구소, 물류시설 등 포함 42개소) 및 기타시설(주유소, 법왕청 등)이 존치예정임. • 화성동탄(2)신도시 내 경부고속도로 기흥, 동탄IC 남측에 변전소, 북측에 케이블헤드, 오수 중계 펌프장 등이 신설 예정이며 이를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화성동탄(2)신도시 내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및 국지도 23호선이 통과(공사)할 예정으로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화성동탄(2)신도시 내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등), 전기공급 설비(변전소, 케이블헤드 등), 가스공급시설, 가압장, 배수지, 장사시설, 특수학교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당사에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음. • 화성동탄(2)신도시 내 서남측 동탄JC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소각)처리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화성동탄(2)신도시 서남측에 연접하여 동탄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동 산업단지 내 수질복원센터(공공하수도시설), 집단 에너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동탄(2)신도시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시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한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사생활침해,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지구 내 인근의 신설· 확장 도로는 인· 허가 추진 일정 및 관계 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화성동탄(2)신도시는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 지역으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당첨자(입주예정자)는 추후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화성동탄(2)신도시 내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주유소,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시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주변의 버스정류장은 현재 교통계획에 의해 표현되었으며, 향후 계획의 변경, 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의 토지이용계획, 조성공사계획(부지조성공사, 조경공사, 전기공사 등), 기반시설계획(상수,오수,우수,전기,광역교통개선대책,학교위치등), 지구단위계획 등은 사업여건 변경 및 유관기관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이 수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택지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필요시 변경)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동 택지지구의 신설학교설립계획은 교육부재정투자심사에 따른 신설학교교부금 확보시기와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경기도일반회계 학교용지매입비용 부담여부 및 시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동 공동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유입되는 고등학생은 택지지구 내 설립예정인 고등학교에 배치 가능하며. 다만, 교육부의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등으로 학교설립 및 학급당 학생수는 변동될 수 있음에 따라 향후 개발계획 등 학생배치 여건이 변동될 경우 경기도 교육청과 재협의 될 수 있음. • 초등학생은 동탄24초교(가칭)에 배치를 계획하고 있고, 중학생은 동탄 2-2중학군에 배치를 계획할 계획이나 교육부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신설학교 설립 지연 시 입주시기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 동탄 2-2중학군은 총 8개교로 운영할 계획이나 2018년 기준 배치학교는 신설학교 설립승인 여부에 따라 변동될 예정이며, 신설학교 설립계획은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설립승인) 결과 및 학생배치계획 □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동탄JC 인근(폐1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오니(약15,000㎡)이를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학교,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동탄(2)신도시 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지 내 집하시설 투입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화성동탄(2)지구 내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 관계가 없으며, 노선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수도, 학교 등)은 LH,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설치하는 사항을 개발계획 변경 등을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분양사업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공공지, 완충녹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의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부지 개발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전자파, 전자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 환경으로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변 개발현황을 면밀히 확인 후 계약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 주위의 도로에 의한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설계	• 주동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계약세대가 속한 동 및 층, 향, 세대에 따라 일조 및 조망, 채광, 통풍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음.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해당 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공용홀, 지하주차장의 마감,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분양전 승인도서에 준함. (공용홀 기준층, 공용계단 벽,천장은 수성페인트 마감기준임)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함. • 천연자재(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생산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수목, 시설물 등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위치와 형태, 재료가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설계변경에 따른 담장 및 부속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시설배치 면적과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의 설계사항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외관디자인 및 색채계획, 미술장식품계획, 조경계획, 야관경관계획 등은 해당관청의 인허가 협의에 의해 보완 및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본 공사 시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의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또한 구조, 성능, 제품의 사양은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주거공용부분인 전실 및 엘리베이트홀등을 향후 입주민들의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견본주택 건립안과 설계도서가 상이한 점이 발생되는 경우 견본주택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세대 및 기타 설계변경 사항이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에 표현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 및 경관조명은 현재 추진중인 계획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해당관청의 인허가 협의에 따라 입면디자인(저층부 석재 및 도장디자인 포함), 주출입구, 색채, 몰딩, 창호, 문주, 상가, 커뮤니티옥상장식물, 경관조명,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 및 형태, 마감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외 기반시설(도로,소공원,공공공지,자전거도로,버스정류장,방음시설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D/A, Top Light, 상가, 옥외 엘리베이터, 주차장 계단실,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배치 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와 외부도로 및 공공공지 사이 경계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단지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A70블록 사업부지 동측으로 12.5M, 서측으로 10M, 남측으로 20.5M, 북측으로 31.5M에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A71블록 사업부지 동측으로 10M, 서측으로 20.5M, 남측으로 20.5M, 북측으로 31.5M에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A72블록 사업부지 동측으로 20.5M, 서측으로 12.5M, 남측으로 20.5M, 북측으로 31.5M에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도시계획도로에 면하고 있어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A70블록의 2451동, 2452동 북측 대지경계선에 역L형 옹벽 벽체가 약 1~3M 노출될 수 있으며, 각 동에서 옹벽까지 이격거리는 약 11M~30M가 될 수 있음. 옹벽 벽체 노출부위는 콘크리트 노출로 마감하며, 또한 현장여건 및 설계변경에 따라 옹벽공법, 재질 및 마감, 처리방법(법면등)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A70블록의 2452동, 2455동, 2457동 서측 대지경계선에 역L형옹벽 벽체가 약0.5M~3M 노출될 수 잇으며, 각 동에서 옹벽까지 이격거리는 약9M~23M가 될 수 있음. 옹벽 벽체 노출부위는 콘크리트 노출로 마감하며, 또한 현장여건 및 설계변경에 따라 옹벽공법, 재질 및 마감, 처리방법(법면등)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A70블록의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공공공지, 도로, 보도 등)간에 레벨차이가 있어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 부위는 옹벽 및 법면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A70블록의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부가 단지주변보다 낮게 배치되어 있는 2451,2452,2455,2457동은 차량소음, 자동차전조등, 보행자소음, 옹벽노출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A71블록의 2486동, 2485동 남측, 유치원 서측 대지경계선에 L형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단지 외부에서 벽체가 약 1~4M 노출될 수 있음. 각 동에서 옹벽까지 이격거리는 약 7M~12M가 될 수 있음. 옹벽 벽체 노출부위는 콘크리트 노출로 마감하며, 또한 현장여건 및 설계변경에 따라 옹벽공법, 재질 및 마감, 처리방법(법면등)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A71블록의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공공공지, 도로, 보도 등)간에 레벨차이가 있어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 부위는 옹벽 및 법면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A72블록의 2561동,2564동,2567동 서측 대지경계선에 L형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단지 외부에서 벽체가 약1~4.5M 노출될 수 있음. 각 동에서 옹벽까지 이격거리는 약 10M~21M가 될 수 있음. 옹벽 벽체 노출부위는 콘크리트 노출로 마감하며, 또한 현장여건 및 설계변경에 따라 옹벽공법, 재질 및 마감, 처리방법(법면등)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A72블록의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공공공지, 도로, 보도 등)간에 레벨차이가 있어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 부위는 옹벽 및 법면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A72블록의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부가 단지주변보다 낮게 배치되어 있는 2451,2452,2455,2457동은 차량소음, 자동차전조등, 보행자소음, 옹벽노출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부에 놀이터, 정원, 마당, 주민운동시설, 유치원체육장(놀이터, A71블록) 등의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고,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식재로 인한 조망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물 외부장식물에 의해 조망 및 일조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세대를 확인하여야 함. •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E/V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 할 수 있고, 아파트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설치에 따른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저층부 세대의 경우 석재 마감으로 인해 외부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됨. • 본 단지의 난방은 집단에너지공급에 의한 지역난방 방식임. • A70블록의 단지내 지하주차장 출입램프에 인접한 동(2453,2454,2456동)은 차량의 진출입시 입출차 경보설비의 소음 및 불빛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A71블록의 2482동은 단지내 단차에 의해 1층 엘리베이터홀까지 1개층 계단을 이용하여 접근하게 됨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A71블록의 단지 동측 지하1층에는 주민공동시설이 지하주차장과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므로, 계약전 위치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상기 시설을 위한 실외기 설치로 인한 생활소음, 이용소음 등 불편,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A71블록의 단지내 지하주차장 출입램프에 인접한 동(2481동,2483동)은 차량의 진출입시 입출차 경보설비의 소음 및 불빛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A72블록의 단지내 지하주차장 출입램프에 인접한 동(2562동,2563동,2566동)은 차량의 진출입시 입출차 경보설비의 소음 및 불빛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에 보안등 설치로 인해 저층부세대는 야간에 조명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커뮤니티 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류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A70블록의 2456동은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수 있으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A70블록의 2453동의 지하층에는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주변 세대에 간섭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A70블록의 2453동의 저층세대는 단지내 어린이집과 유아놀이터가 인접 배치되어 조망간섭과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발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A70블록의 2451동,2453동,2455동,2457동의 저층세대는 단지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이 인접 배치되어 조망간섭과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발생과 야간조명에 의한 빛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A70블록의 2451동, 2453동과 인접하여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므로 조망간섭과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발생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A70블록의 단지내 2451동,2452동,2453동,2454동,2455동의 지하주차장 층에 기계실, 전기실이 설치되어 지상의 환기용 그릴창(D/A)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급기/배기 방향 및 위치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A70블록의 단지내 생활폐기물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장)과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인허가권자와 협의 후 위치 및 개수가 선정됨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생활폐기물보관소는 총2개소로 2451동(동측), 2452동(서측), 2454동(북측), 2457동(북측)에 설치 예정이므로,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A71블록의 2481동은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수 있으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A71블록은 지구단위지침에 의거 유치원이 단지내 위치하며, 인접한 동(2483동,2485동)은 이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A71블록의 2484동 저층부 전면에 관리동 및 관리동 1층에 경로당이 위치함. • A71블록의 2486동 북측배면에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2484동,8486동은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A71블록의 2485동과 2486동의 저층세대는 단지내 어린이집과 유아놀이터가 인접 배치되어 조망간섭과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발생이 있을 수 있음. • A71블록의 2484동의 저층세대는 단지 관리동과 어린이놀이터가 인접 배치되어 조망간섭과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발생이 있을 수 있음. • A71블록의 2484동의 지하주차장 층에 주민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이 있을수 있음. • A71블록의 단지내 2485동의 지하주차장 층에 기계실, 전기실이 설치되어 지상의 환기용 그릴창(D/A)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급기/배기방향 및 위치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매연, 분진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A71블록의 단지내 생활폐기물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장)과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인허가권자와 협의 후 위치 및 개수가 선정됨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생활폐기물보관소는 총 6개소로 2481동(동측), 2482동(동측), 2472동(북동측), 2484동(북서측), 2485동(북동측),2486동(북측)에 설치 예정이므로,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A71블록의 단지내 발전기실 급배기D/A에 인접한 동(2485동)은 단지내 정전, 전기설비 검사 등으로 인하여 비상발전기 운전시 소음, 진동, 분진 및 배기가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A71블록의 단지내 지하주차장 출입램프에 인접한 동(2481,2482,2483,2484동)은 차량의 진출입시 입출차 경보설비의 소음 및 불빛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A72블록의 2566동은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수 있으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A72블록의 2566동,2568동의 1층에는 여성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주변세대에 간섭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A72블록의 2565동과 2566동의 저층세대는 단지내 어린이집과 유아놀이터가 인접 배치되어 조망간섭과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발생이 있을 수 있음. • A72블록의 2562동과 2563동의 저층세대는 단지 관리동과 어린이놀이터가 인접 배치되어 조망간섭과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발생이 있을 수 있음.

	• A72블록의 2561동의 저층세대는 주민운동시설과 인접 배치되어 조망간섭과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발생과 야간조명에 의한 빛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A72블록의 단지내 2566동의 지하주차장 층에 기계실, 전기실이 설치되어 지상의 환기용 그릴창(D/A)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급기/배기방향 및 위치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매연, 분진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A72블록의 단지내 생활폐기물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장)과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인허가권자와 협의 후 위치 및 개수가 선정됨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생활폐기물보관소는 총 4개소로 2561동(남측), 2563동(서측), 2565동(동측), 2568동(서측))에 설치 예정이므로,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A72블록의 단지내 발전기실 급배기D/A에 인접한 동(2566동)은 단지내 정전, 전기설비 검사 등으로 인하여 비상발전기 운전시 소음, 진동, 분진 및 배기가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A72블록의 단지내 지하주차장 출입램프에 인접한 동(2561,2563,2564,2565,2566동)은 차량의 진출입시 입출차 경보설비의 소음 및 불빛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경로당은 사용검사 후 해당읍.면(동)사무소에 경로당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함. • 각종 부대시설 지붕에는 실외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추후 단지내 조경구간에 보행자동선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인접 저층세대에게 소음,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우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해당관청 인허가시 형태, 방향, 설치유무가 변경될 수 있음) • 커뮤니티에 설치되는 실내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으로 운영 할 수 없음.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 단지의 레벨차로 인하여 인허가시 지하주차장은 지하2층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 각 동별 접근가능한 지하주차장 층수는 지하1개층~지하2개층으로 다양하며, 각 동별 세부사항은 직접 방문하시어 분양전 승인도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은 단지의 레벨차로 인하여 동 하부 지하층의 외벽이 지상층의 외벽이 지상에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해당층이 각종 부대시설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성페인트로 지하층 노출외벽을 마감하오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8. 기타사항

■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A70블록 □A71블록 □A72블록 공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4조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 분	항 목	적용여부	판 정 근 거
의무사항 이행여부	고효율 기자재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펌프, 전동기)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 이상씩 설치.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전용 60㎡ 이상 세대내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적용을 세대 및 공용부위 내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화장실내 자동점멸 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실별로 온도제어가 가능한 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 내 수전류는 관련법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통신감리
A70블록	회 사 명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해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명기술단
	감리금액	₩ 1,358,115,000	₩ 381,368,916	₩ 250,000,000
A71블록	회 사 명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유원이엔에프㈜	㈜대명기술단
	감리금액	₩ 1,365,914,000	₩ 385,825,354	₩ 250,000,000

A72블록	회 사 명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대명기술단
	감리금액	₩ 1,784,640,000	₩ 381,546,554	₩ 250,000,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 2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12개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아래 항목별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사전 추정가격으로 준공 시 소요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사후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분양가격 공시내용**

• **A70블록** (단위: 천원/VAT 포함)

항목	공종	금액	비 고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60,028,097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기간이자	12,149,608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부터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그 밖의 비용	2,974,531	필요적 경비 등 그 밖의 비용
계		75,152,236	
공사비	토목	4,714,756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토목공사비
	건축	48,130,319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등 건축공사비
	기계설비	9,230,472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등 기계설비공사비
	그 밖의 공종	13,808,388	전기, 소방설비 등 그 밖의 공종 공사비
	그 밖의 공사비	4,975,996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		80,859,931	
간접비	설계비	345,000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감리비	1,989,483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부대비	7,169,669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제4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 관련 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계		9,504,152	
그 밖의 비용		41,191,481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합 계		206,707,800	

• **A71블록** (단위: 천원/VAT 포함)

항목	공종	금액	비 고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68,214,428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기간이자	14,748,625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부터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그 밖의 비용	10,219,206	필요적 경비 등 그 밖의 비용
계		93,182,259	
공사비	토목	4,819,606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토목공사비
	건축	49,200,674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등 건축공사비
	기계설비	9,435,746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등 기계설비공사비
	그 밖의 공종	14,115,469	전기, 소방설비 등 그 밖의 공종 공사비
	그 밖의 공사비	5,086,655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		82,658,150	
간접비	설계비	366,000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감리비	2,001,739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부대비	7,347,773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제4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 관련 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계		9,715,512	
그 밖의 비용		35,769,079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합계		221,325,000	

• **A72블록** (단위: 천원/VAT 포함)

항목	공종	금액	비 고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95,120,242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기간이자	20,565,924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부터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그 밖의 비용	9,911,683	필요적 경비 등 그 밖의 비용
계		125,597,849	
공사비	토목	6,395,625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토목공사비
	건축	65,289,378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등 건축공사비
	기계설비	12,521,251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등 기계설비공사비
	그 밖의 공종	18,731,250	전기, 소방설비 등 그 밖의 공종 공사비
	그 밖의 공사비	6,750,001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		109,687,505	
간접비	설계비	501,000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감리비	2,416,186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부대비	9,975,314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제4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 관련 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계		12,892,500	
그 밖의 비용		53,113,146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합계		301,291,000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보증 주요내용**

구 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A70블록	제 01222016-101-0004200 호	₩ 144,695,46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A71블록	제 01222016-101-0004400 호	₩ 154,927,500,000원	
A72블록	제 01222016-101-0004300 호	₩ 210,903,700,000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1조 제4호)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 파산·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성립(「보증약관」 제2조) -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얻은 때(상가의 경우에는 신고를 한 때를 말한다)에 유효하게 성립한다.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3조)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 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

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한 입주금은 제외한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공동사업주체·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공동사업주체·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공동사업주체·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공동사업주체·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A70블록 □A71블록 □A72블록 공통)

구 분	사 업 주 체 및 시 공 회 사
상 호 명	㈜ 부 영 주 택
주 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20-23
등 록 번 호	110111 - 4252188

▣ 홈페이지 : http://dongtan2hosu.booyoung.co.kr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방교리 29-1번지

▣ 분양문의 : ☎ 1577-5533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